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(집단·흉기 등 상해)·재물은닉·폭행·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(상습상해)

[대구지방법원 2012. 8. 23. 2011고단6578,2011고단6196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이대성(기소), 천재인(공판)

【변 호 인】변호사 박준섭(국선)

【주문】

]

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